[해외산업간호정보]

프랑스의 보건관리자 제도

이 복 임 /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저자는 '보건관리자 자격개선 및 선임업종확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여 외국의 보건관리자 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된 프랑스 보건관리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프랑스의 산업보건 일반 현황

프랑스의 총 사업장수는 300만여 개소이고, 근로자수는 2,700만여 명에 이르며 이 중 1,400만여 명이 private sector에서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의 산업보건조직은 노동관련 부(ministère du Travail)와 보건관련 부(ministère de la Santé)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관련 부에는 노동조건국(direc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국립근로조건향상기관(agence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24개의 지역근로조건향상기관(agence régionale po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광역차원 23개의 광역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하위차원 103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441명의 근로감독관이 존재한다. 보건관련 부에는 사회보장국(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국립근로자질병보험공단(caisse nationale de l' 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국립연구·안전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sécurié), 16개의 지역근로자질병보험공단(caisse régionale de l' 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노동관련 부와 건강관련 부 사이에 직업위험상위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risques professionnels), 프랑스보건안전 · 환경 · 노동기관(agence française de sécurité sanitaire et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지역협약위원회(comité régional de

la coordination)가 존재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2.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적용 범위

프랑스는 산업보건서비스 규정을 강제하는 엄격한 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산업보건제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일반적 원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보건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제 L. 4621-1조에 의하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기업주는 반드시 작업장에 있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적용을 받는 기업은 산업·상업 공공기업, 근로자가 사법상의 적용을 받는 공공행정기관, 보건·사회·의료기관, 운송회사이다(노동법전 L. 4111-1조).

3. 보건관리자 자격 및 교육제도

① 산업간호사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와 첫 번째로 접촉하는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문제가 발견되면 의사나 회사 내 다른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하므로 발견된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산업간호사는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 관리 업무와 건강증진프로젝트가 회사 내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지 살피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 만약 신규 근로자가 들어온 경우,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내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방Ý 건강도움을 줄 수 있는 지(맞는 일자리의 성격)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리적·재정적 문제 등으로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의사가 가끔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간호사가 회사에 상주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간호사로 하여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원하며 인간공학자와 위생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점을 도출하기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산업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되며 산업 의사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되고 있다. 노동법전 제 R. 4623-51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0명 이상 8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적어도 한 명의 산업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본 근로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명당 한 명의 산업간호사를 더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을 제외한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타 기업에서도 한 명의 산업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본 근로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명당 한 명의 산업간호사를 더 배치해야 한다. 200명 미만의 사업장과 500명 미만의 기타 기업에서 산업의사와 기업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한 명의 산업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주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근로의사감독관의 의견수렴 후에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산업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6,000여명에 이른다.

프랑스의 산업간호사 학위과정은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산업간호사 6,000여명 중 약 1,000여명 정도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산업간호사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이 존재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간호 학위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학위 소지 산업간호사의 고용이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업간호사 기준을 석사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으나, 이런 경우 사업주가 더 높은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향후 2년 내에 현직 산업보건의사 절반이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간호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간호사 수요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의 몇몇 분야 일(근로자 건강상담 등)을 학위 소지 간호사가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더불어 간호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산업의사

산업의사의 역할은 전적으로 예방역할이며 특별히 작업장의 보건환경과 감염위험, 건강상태를 관찰하면서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악화를 억제하는 것이다. 산업의사는 나이, 체력조건,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작업대의 이동이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안을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에 대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산업의사의 제안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어려움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근로의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풀타임으로 고용된 산업의사는 본인의 업무 시간 중 1/3 이상(150일 이상)을 사업장을 직접 순시하고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직접 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산업의사 1인당 최대 관리 사업장수는 450개, 의료 검진수는 3,200회, 관리 근로자수는 3,3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노동법전 제 R. 4623-10조). 파트타임의 산업의사는 총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관리 사업장수, 검사횟수, 근로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산업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7,000여명에 이른다.

사업장 내부에 선임되어 있든 산업보건서비스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산업보건의사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으며, 산업보건의사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의사감독관에게 5년 마다 한 번

씩 검증 받아야 한다.

노동법전 제 R. 4623-2조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를 충족시켜야 산업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첫째, 산업의학 관련 특별학업자격증의 취득, 둘째, 박사전(前) 과정에서 산업의학 관련 특별학업학위의 취득, 셋째, 산업의학 전문의협회에 가입, 넷째, 1998년 1월 1일 인간을 위한 최종생산물의 보건준수와 보건안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loi n° 98-535 du 1 juillet 1998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veille sanitaire et du contrôle de la sécurité sanitaire des produits destinés à l'homme)과 2002년 1월 17일 사회현대화 법(loi n° 2002-73 du 17 janvier 2002 de modernisation sociale)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산업의사로서 인정, 다섯째, 근로보건과 직업상의 위험예방을 위한 자격소지 여부이다.

4. 보건관리자 선임형태

보건관리자의 선임 형태는 내부 선임과 외부 선임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형태는 회사 내의 전담 산업보건인력을 두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산업보건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고, 산업의사, 산업간호사, 기타 관련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팀이 구성된다. 5년 마다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의료감독을 받아야 한다. 후자의 형태는, 여러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서비스를 위하여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현재 90% 이상의 근로자가 외부 조직에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조직 소속이므로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또한 5년 마다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의료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어떤 형태로든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형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부 선임을 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수가 2,200명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수에 따른 건강검진횟수가 2,134번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은 반드시 독자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주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 외부 선임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수가 412.5명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건강검진횟수가 401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근로자수의 비율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나누어 책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필요한 사업장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간호사를 공동으로 고용하고 임금은 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전달 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별 간호사의 근무 시간은 협의 하에 결정하게 된다.